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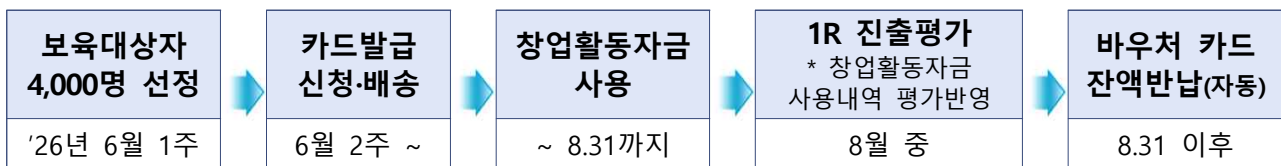
# 모두의 창업프로젝트 창업활동자금 집행가이드

아이디어만으로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의  
보육단계 도전자 대상 창업활동자금 지원·사용관련 세부 가이드입니다.

## □ 창업활동자금 개요

- (목적) 도전자의 창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초기 창업활동 자금 지원을 통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.

### < 창업활동자금 지원 절차 >



- (대상) 모두의 창업 보육대상자 4,000명
- (자금사용) 아이템개발에 필요한 재료비·외주용역비, 창업활동에 필요한 문헌구입, 교육·멘토링 참석에 필요한 여비, 회의비 사용 가능

### < 창업활동자금 사용처(요약) >

- ▶ **【재료구입】** 창업 아이템 관련 시제품, MVP(최소요건제품) 개발을 위한 원재료 구입
- ▶ **【외주용역】** 창업 아이템 관련 시제품, MVP(최소요건제품) 개발을 위한 전문업체 활용
- ▶ **【문헌구입】** 창업 아이템 개발, 아이디어고도화를 위한 관련 서적, 문헌구입
- ▶ **【지급수수료】** 창업 아이템 관련 전시회·세미나 참가비, 시험인증 등 수수료
- ▶ **【여비】** 멘토링 참여, 멘토기관 주최행사, 평가 참석, 창업 아이템 관련 활동을 위한 교통여비 사용
- ▶ **【회의비】** 창업활동을 위한 외부인 미팅, 자문회의 등을 위한 식사비

- (평가활용) 1R 진출자(500명) 선정평가시, 창업활동자금 활용 내역을 평가지표에 반영 → 성실하게 창업활동을 수행한 도전자를 선정

\* 라운드별 진출자 선정시 창업활동자금, 시제품제작 활동결과를 평가에 직접반영

## □ 창업활동자금 카드발급 · 사용방법

- (카드발급) 도전자가 카드 발급(신한카드)을 신청 및 수령(본인수령)하여 등록 후 사용 가능하며, 사용기한('26.8.31.) 종료 후에는 사용 불가  
\* 14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적 대리인이 카드 발급 신청
- (카드사용) 창업활동자금 카드수령 후 창업활동 관련 목적으로 오프라인 및 온라인(일부) 직접결제하여 사용, 사용잔액은 자동반환
- (카드사용기간) 카드 수령·등록일로부터 ~ '26. 8. 31.까지

## □ 창업활동자금 사용 유의사항

- (사용항목) 아이템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비·외주용역비, 문헌구입비, 여비, 회의비

- 창업활동자금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창업활동자금 즉시 사용중지, 회수 등 제재 조치
- 노트북 등 자산성 물품 구입 불가
- 50만원 초과 집행 시,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멘토기관이 필수 검토  
\* 50만원 이상건은 별도 화면에서 조회 가능

- (사용제한) 기간 종료 후 사용 및 클린카드 적용업종(유흥 등) 등 사용목적을 확인할 수 없는 창업활동자금은 결제를 할 수 없음

※ 카드사용기간 이내 활용(재료소진, 활용기간) 할 수 있는 범위 내 사용이 가능하며, 사용제한 업종(결재방법)에 따라 카드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

| 구분        | 항목정의 및 사용불가 세부내용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재료<br>구입  | 항목정의             | 도전신청서상의 창업아이템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, 데이터 등을 구매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사용예시             | MVP(최소요건제품) 개발을 위한 부속품, 재료구입 및 시장조사를 위한 데이터 자료 구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외주<br>용역비 | 항목정의             | 도전신청서상의 창업아이템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일부 공정을 외부 업체에 의뢰하여 제작하고,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비용      |
|           | 사용예시             | 앱 개발, 제품 모형제작, 리서치, 도면디자인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문헌<br>구입  | 항목정의             | 도전신청서상의 창업아이템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한 목적으로 서적, 문헌 구입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| 사용예시             | 관련 서적, 문헌자료 구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지급<br>수수료 | 항목정의             | 도전신청서상의 창업아이템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소요되는 세미나 참가비,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, 시험·인증비, 기자재 임차비용        |
|           | 사용예시             | 유료세미나, 박람회 참가, 시험 인증 수수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여비<br>회의비 | 항목정의             | 도전신청서상의 창업아이템 개발, 아이디어 고도화를 위해 활동시 필요한 (여비) 출장·이동에 필요한 경비 (회의비) 외부인 미팅 등에 소요되는 식사비 |
|           | 사용예시             | 출장에 소요되는 대중교통, 유류비, 통행료, 외부인과 미팅을 위한 식사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붙임 1 창업활동자금(바우처카드) 사용제한 업종(안)

※ 창업활동자금은 네거티브방식으로 사용제한 업종 사전 차단(클린기능)

| 연번 | 업종구분                   | 지급처 예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  | 온라인전자<br>상거래(PG업종)     | 온라인쇼핑몰, 배달앱* 등 온라인(앱) 거래업체<br>*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, 가맹점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여<br>대면결제(만나서 결제)하는 경우에는 사용 가능 |
| 2  | 클린카드 적용업종(정부구매카드 기준준용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유흥업종                   | '한국표준산업분류'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<br>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위생업종                   |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 등 대인 서비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레저업종                   |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비디오방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사행업종                   |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| 기타                     |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3  | 어린이집, 유치원              | 보육료 등 바우처 지원 어린이집·유치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  | 환금성 업종                 | 상품권 판매점, 귀금속 판매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  | 조세, 공공요금               | 국세, 지방세, 공공요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  | 면세점                    | 면세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  | 보험업(4대보험)              | 생명보험, 손해보험,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  | 무승인 매출 /<br>배치 승인      | 교통·통신비 등 카드 자동이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  | 백화점                    | 백화점, 백화점 내 입점 임대 매장 모두 포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0 | 홈쇼핑                    | CATV 상품판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1 | 보건·의료                  | 종합병원, 개인병원, 치과병원, 약국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2 | 부동산                    | 부동산 중개(중개 수수료), 부동산 임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13 | 기타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창업 활동과 무관한 업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붙임 2   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공고 유의사항(일부)

◆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창업기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 
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.

- ① 동 사업은 창업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,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,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「형법」,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」 등에 따라 **형사처벌 또는 정부지원사업비 전액 환수 및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참여제한**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  - ② 동 사업비의 부정수급을 행할 경우 **부정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  - ③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, 작성자(대필자)와 도전자(대표자, 창업기업) 등 관련자 전원이 **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**될 수 있습니다.
- ※ 사업 신청 과정에서 **제3자(컨설턴트 등)가 선정을 담보로 특정 사례를 요구하거나 접근해 온 경우,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**해 주시길 바랍니다.
- \* **창업진흥원 누리집([www.kised.or.kr](http://www.kised.or.kr)) > 고객광장 > 제3자 부당개입 신고**
- ④ 중소벤처기업부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32조 및 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고의,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**해당자를 고발 조치**할 수 있습니다.

- 표절, 도용, 탈취 또는 기타 허위·부정한 방법으로 작성·제안된 아이디어로 확인될 시,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아이디어로 지원받은 창업활동자금, 사업화자금 및 상금 등은 환수될 수 있음
-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「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제33조의2, 제40조에 따라 지급된 보조금의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
- 본 사업의 도전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또는 제출서류 허위 내용 기재, 위조·변조·표절, 도용, 누락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참여 제한 및 정부 지원 사업비, 상금 등에 대해 환수 조치 될 수 있음